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3
----------	-----

2019년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동현 의원(찬성자 12명)
- 나. 제안일 : 2019년 2월 1일
- 다. 회부일 : 2019년 2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동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인권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하여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인권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5조 제2항).
- 나) 인권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6조 제7항).
- 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일부 재량권을 부여함(안 제20조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2019. 2. 12. ~ 2. 19.)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위원회 직제를 조정하고, 시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 상임 보호관의 조사대상 선정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안 제15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6조제7항)

- 안 제15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6조제7항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이었던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2019.1.1.))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국장→4급 이상 공무원)과 간사(부서의 장→담당사무관)의 직급을 직제에 맞게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장·국장·본부장·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규칙 제425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보좌기관) ① (전단 생략) ...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제24조의2(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다만, 의원발의로 위원 임명 등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취지로 볼 때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에 대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¹⁾」에 따른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나. 상임 보호관의 조사대상 선정 권한 확대(안 제20조제3항)

- 안 제20조제3항은 현행 신청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의 경우 무조건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가 각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직무) ①·② (생략)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제20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u>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u>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	2.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
3. <u>그 밖에 조사신청이</u>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u>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u>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3. <u>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u>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안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u>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신설〉	7.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

○ 최근 5년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실적을 보면, 조사신청 총 592건 중 197건이 각하처분(33.3%)되었으며, 시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위원회의 권리구제 등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인권침해 사항 사건 조사 실적 > (2019. 1. 31. 기준)

구분	조사 신청 건수(결정일 기준)						
	소계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시정권고
합계	592	197	129	120	37	7	102 (병합10건 포함)
'18	123	15	27	35	5	4	37 (병합4건)
'17	120	27	29	25	10	3	26 (병합1건)
'16	92	23	23	19	9		18 (병합2건)
'15	99	39	25	16	9		10
'14	158	93	25	25	4		11 (병합3건)

- ※ 2016.9.29. 본 조례 개정으로 다른 구제기관에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각하하도록 강행 규정한 후 현재까지 같은 사유로 각하한 건수는 5건임.
- ※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 각하, 취하 건수를 제외한 실제 조사 건수는 275건, 연평균 55건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건수를 확대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본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한 타 기관에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개별 사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조사 및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른 인권구제 기관과 동일한 사안이 구제위원회에 조사신청 되었음에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병행 조사하게 될 경우, 행정력의 낭비 우려는 없는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인권구제 기관별 상이한 판단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보공유 및 조사권 이첩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13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상진, 송재혁, 송정빈,
오현정, 이병도, 이상훈, 이현찬,
정지권, 정진술, 최 선, 한기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인권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하여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인권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5조 제2항).

나. 인권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6조 제7항).

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일부 재량권을 부여함(안 제20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호 중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당연직으로 한다)</p> <p>제16조(운영) ①~⑥ (생략)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 부서의 장이 된다.</p> <p>제20조(직무) ①·② (생략)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u>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 3. <u>그 밖에 조사신청이</u>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u>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u>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u>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p> <p>제16조(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20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u>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 3. <u>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u>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